

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1호	6,000
나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2호	10,000